

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

의 번 호	제52호
-------------	------

제출일 : 2003. 3.
제출자 : 예산군수

□ 제안이유

21세기 지식·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나아갈 자치기반을 구축하고, 변화하는 자치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이 높은 각 분야의 골드칼라인 대학교수, 분야별 전문가, 사회·시민단체 임원, 일반군민, 공무원을 대상으로 『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』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대하여 조언·권고·건의·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2조)
-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内外로 구성하되 분야별 전문가, 사회·시민단체 임원, 일반 군민,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함. (안 제3조)
-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. (안 제4조)
-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연2회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함. (안 제7조)
- 위원회가 필요가 인정할 때에는 정책 세미나, 포럼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, 이해관계인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9조)

-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실·과, 읍·면, 직속기관, 사업소에 자료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0조)
-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관련기관 단체와 상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1조)
-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2조)
- 위원회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 대안이나 실천과제에 대하여는 최대한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3조)

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(자문기관의 설치)
- 서천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
- 입법예고(2003. 1. 15 ~ 2. 4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예산군 조례 제 호

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,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중요정책에 대하여 조언·권고·견의·자문 등에 응하는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예산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의 제안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언·권고·견의·자문 등을 할 수 있다.

1. 군정 중요 정책의 계획수립·집행에 따른 조언·견의등
2. 시책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설정의 합리성 등에 대한 예측 및 전반에 관한 사항.
3. 군정 주요 분야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
4. 경영수익사업 및 행정제도·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
5. 지역 주요현안의 해결에 관한 사항
6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장, 부위원장 각1인 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

②위원회는 지역개발, 환경, 사회복지, 디자인, 법률, 건축 등 행정 각 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학계인사, 분야별 전문가, 사회·시민 단체 임원, 일반 군민,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③위원장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4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1년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.
2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.

3.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5조(임기)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다만,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등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합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.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.

②간사는 경영관리실장이 되고, 서기는 경영개발담당이 된다.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실·과장 및 담당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③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9조(정책세미나 등의 개최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세미나 및 포럼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, 이해관계인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10조(자료제출 및 협조요구)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실·과·직속기관·사업소, 읍·면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

의 제시, 자료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, 기타 협조요청을 받은 실·과·직속기관·사업소, 읍·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1조(연구의뢰등) ①군수는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를 의뢰받은 위원회는 관련기관·단체와 상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제12조(재정지원)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연구 및 토론회장처리)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대안이나 실천과제에 대하여 범군민적인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최대한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한다.

제14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예산군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